

# 2013년 자활지원정책이해 역량강화교육

「일 시」 : 2013년 2월 6일(수) ~ 7일(목)

「장 소」 : 리솜스파캐슬덕산(충남 예산소재)



재단  
법인

중앙자활센터



# 목 차

I. 교육개요	1
II. 2013년 자활지원정책이해 역량강화교육	5
1. 2013년 보건복지부 자활지원정책 안내	7
2. 2013년 자활사업안내 (2013년 자활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	25
3. 중앙자활센터 2013년 사업추진 계획	61
4.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최근동향과 자활사업의 발전전망	73
III. 기타	87
1. 참석자 숙소 배정현황	89
2. 질의서	101



# I. 교육개요



## 2013년 자활지원정책이해 역량강화교육

- '13년 정관변화로 복지·고용통합 운영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확대
- '13년 새로운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 속에서 자립 지원 사업 방향을 예측해 보고 정부의 정책성과 확대와 전국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자활지원정책이해 역량 강화 필요
- 또한 민·관 협력의 기틀 구축과 정책 효과 확대를 위해 '13년 자활사업안내 주요 개정 내용 교육 실시

### 1

## 추진개요

### 방향

새정부 정책기조와 복지·고용연계를 통한 저소득 실업자 및 수급자 자립성과 확대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의 이해도 제고와 민·관 협력 체계구축

### 교육개요

- ◎ 일 시 : 2013년 2월 6일(수) 14:00 ~ 7일(목) 12:00
- ◎ 장 소 : 리솜스파캐슬덕산(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361)
- ◎ 참석자 : 지역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센터장  
※ 센터장 부재시 실장/사무국장(광역) 참석
- ◎ 교육내용
  - 2013년 보건복지부 자활지원 정책 방향 및 자활사업 안내
    - 2012년 대비 2013년 변경내용 비교 안내
    - 지역자활센터 지침 적용 사례 공유
  - 복지·고용연계 프로그램 정책기조 분석 및 향후 자활사업 환경변화
    - 복지·고용 연계정책의 최근동향과 자활사업의 발전전망
    -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사업구조 변화 방향 토론

## 2

## 세부추진 내용

## □ 세부사업내용

## ○ 1일차

시 간 (분)	행 사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도착, 등록	리솜스파캐슬덕산 주니퍼홀(1층)
14:00~14:20	20	워크숍의의 설명 및 인사말	·환영사(중앙자활센터원장) ·격려사(보건복지부, 자활협회장)
14:20~14:50	30	2013년 보건복지부 자활지원정책 안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14:50~15:10	20	2013년 자활사업안내 주요개정내용 I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15:10~15:30	20	휴식	
15:30~16:30	60	2013년 자활사업안내 주요개정내용 II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16:30~17:10	40	질의응답	
17:10~17:30	20	휴식	
17:30~18:00	30	중앙자활센터 2013년 사업추진 계획	중앙자활센터
18:00~19:00	60	저녁식사	스파동 포티나인
19:00~		시·도별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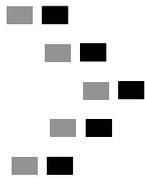
## ○ 2일차

시 간 (분)	행 사 내 용	비 고	
08:00~09:40	100	아침식사	스파동 포티나인
09:40~11:10	90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최근동향과 자활사업의 발전전망	노대명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
11:10~11:30	20	휴 식	
11:30~12:00		총평 및 마무리	

※ 교육일정/내용은 당일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Ⅱ. 2013년 자활지원정책이해 역량강화교육





# 1. 2013년 보건복지부 자활지원정책 안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자활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안)



※ 등 자료는 검토 사항으로 인용할 수 없습니다.

## 자활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안)



[www.mw.go.kr](http://www.mw.go.kr)



제1장. 추진배경 및 여건



제2장. 현황 및 문제점



제3장. 추진방향(안)

## 제1장. 추진배경 및 여건



1. 추진배경
2. 추진성과
3. 2013년 정책환경 분석

3

## 정책배경 및 여건

### 1 추진 배경

-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
  -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입, 빈곤층 자립지원 제도화
- ◎ 종전 자활사업은 국가의 생계보호에 따른 조건이행 측면만 강조
  - 탈수급, 탈빈곤 정책으로 한계점 노출

수급자의 자립, 차상위층의 빈곤층 전략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자립지원정책 추진**

#### 대통령님 말씀

“생산적 복지, 일하는 복지, ...  
수급자 지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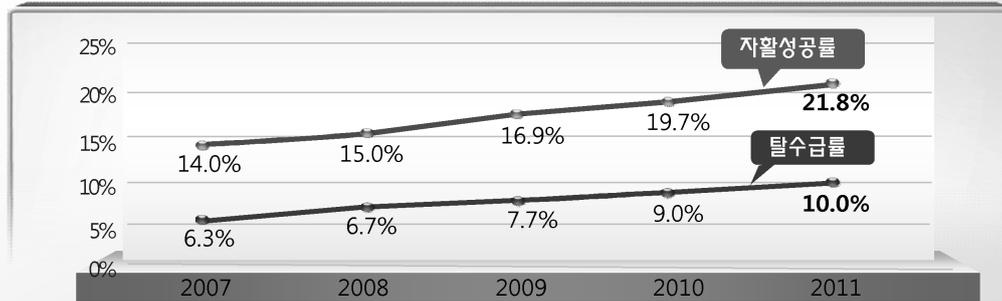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11.4.13)

4

## 2 추진 성과('07~'12년)

### ◎ 근로빈곤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

- 자활성공률(취창업률, 탈수급률) 지속적으로 향상



### ◎ 복지부-고용부(지자체-고용센터)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취업지원 강화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2 추진 성과 ('07~'12년)

### [자활프로그램 다양화]

#### ◎ 성과중심 자활사업 : 희망리본 사업 도입·확대('09년~)

- ('09년) 2천명 ⇒ ('10년) 3.2천명 ⇒ ('11-'12년) 4천명

#### ◎ 취업성공패키지 도입·확대('09년~)

- ('09년) 2천명 ⇒ ('10년) 2.5천명 ⇒ ('11년) 7천명 ⇒ ('12년) 9천명

#### ◎ 자산형성지원 사업 : 희망키움통장 도입·확대('10년~)

- ('10년) 10천명 ⇒ ('11년) 15천명 ⇒ ('12년) 18천명

### 2 추진 성과 ('07~'12년)

#### [자활 인프라 확충]

- ◎ 자활연수원 건립 추진('10년~)
  - 설계('12.2~11월) ⇒ 시설공사(~'13.6월) ⇒ '14년 하반기 개원 예정
- ◎ 광역자활센터 법적 근거 마련('12.8월)
  - ('07년) 3개 ⇒ ('08년) 6개 ⇒ ('09년) 7개
- ◎ 근로능력평가 연금공단 위탁('12.12월)
  - ('10년) 근로능력평가 도입

7

### 3 2013년 자활환경 분석

- ◎ 경제여건 악화로 지속적 빈곤 심화
  - 잠재성장률 저하, 인구고령화, 유럽발 금융 위기
- ◎ 사회양극화로 실업빈곤 및 근로빈곤 심화
  - 세계화, 정보화 등의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 양극화
- ◎ 복지-고용 연계의 필요성 증대
  - 복지부와 고용부가 함께하는 적극적인 복지-고용 연계정책 필요
- ◎ 성과관리 강화 및 효율성 제고 요청 고조
  - 지역자활센터 사업운영 및 관리강화, 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

8

자활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안)



www.m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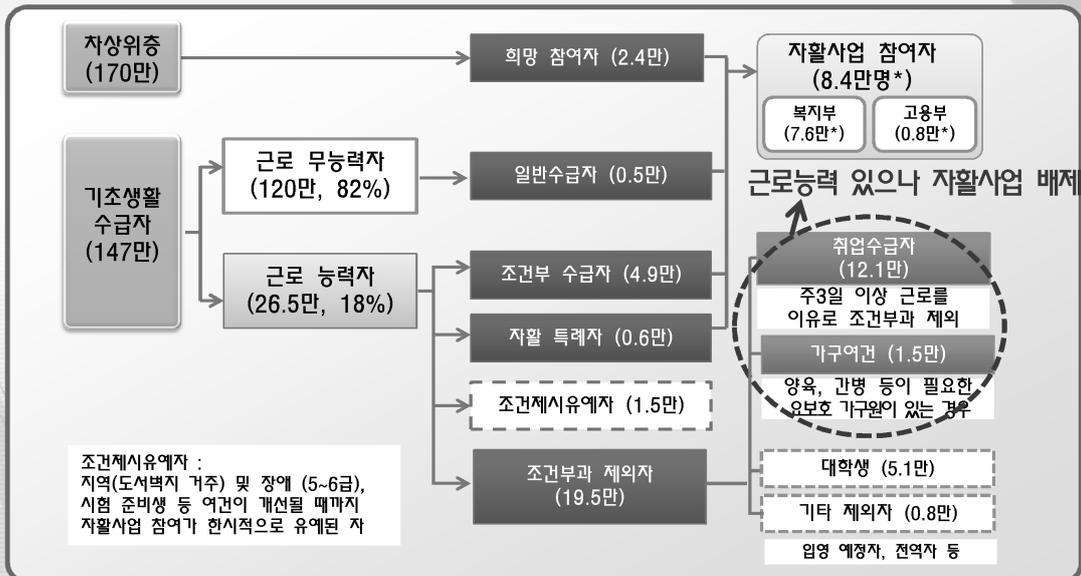
제2장. 현황 및 문제점



1. 자활사업 참여현황 ('11.12월 기준)
2. 자활사업 예산현황
3.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1 자활사업 참여현황 ('11.12월 기준)



## 2 자활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	%	주요 명세
계	533,328	579,566	46,228	8.7	-
자활사업	442,999	472,269	270	6.6	-
-자활근로	396,900	409,857	12,957	3.3	'13년 66천명 지원 예정
-자활사례관리	762	1,020	258	33.9	60개소
-성과중심자활사업 (희망리본사업)	9,022	22,282	13,260	147.0	'12년 4천명 → '13년 10천명 지원 예정)
-지역자활센터운영	36,315	38,810	2,495	6.8	지역자활센터: 247개소(225백만원/1개소) 청소년자활프로그램 27개(65백만원/1개)
-자활통계시스템 선진화	-	300	순증		통계 및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7,202	15,031	7,829	1.08	중앙자활센터: 1개소 2,127백만원 광역자활지원센터(7개소) 2,075백만원(442백만원/1개소) 한국자활연수원 건립(1개소) 9,901백만원
자활사업관리	226	203	△23	△10.2	사업추진 경상 경비
생업자금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	1,054	989	△65	△15.5	손실보전금 : 504백만원 이차보전료 : 485백만원
자활장려금 (구, 자활소득공제)	37,441	38,937	1,496	4.0	자활장려금 : 38천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	37,436	43,475	6,039	16.1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12년 18천 가구 → '13년 누적 32천명 지원 예정)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운영	6,970	8,652	1,682	24.1	인건비 : 5,573백만원 운영비 : 3,079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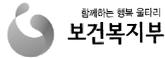
11

## 3 문제점

- ◎ (대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26.5만명)의 약 18%에 해당하는 5.5만명의 수급자만 자활사업 참여 ➡ **대상 확대 필요**
- ◎ (프로그램) 공급자 편의적으로 사업단 인력 수급 상황에 따른 배치, 사업단 운영 치중 ➡ **수요자 중심 자활사업**
- ◎ (근로유인) 대상 및 지원 규모 협소 ➡ **근로인센티브 제공 강화**
- ◎ (인프라) 자활센터 위주 탈수급 제고 자활사업 추진 ➡ **성과형 인프라**
  - (전달체계) 자활센터 성과관리 미흡, 복지-고용기관 연계 강화 필요
  - (평가체계) 취창업률, 탈수급률 단편적인 성과지표 활용

12

자활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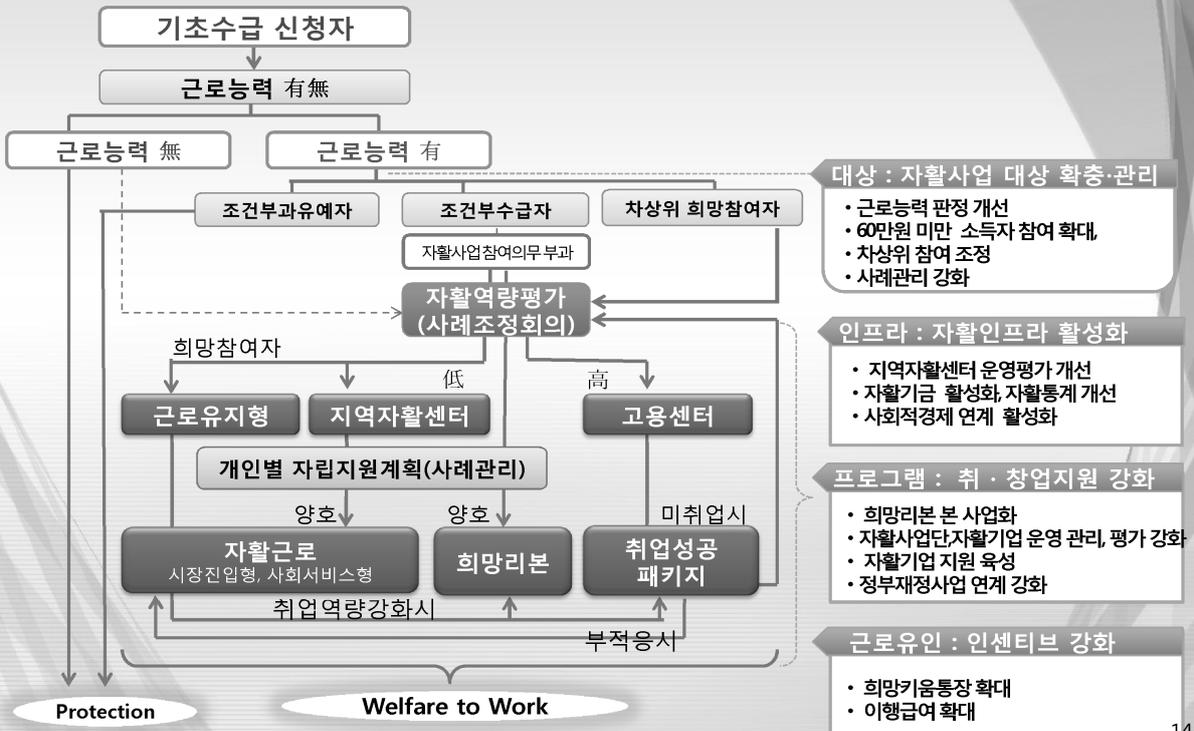
www.mw.go.kr

제3장. 추진방향(안)



1. 대상 :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
2. 프로그램 : 취·창업 지원 강화
3. 근로유인 : 일할수록 유리한 인센티브 제공
4. 인프라 : 자활인프라의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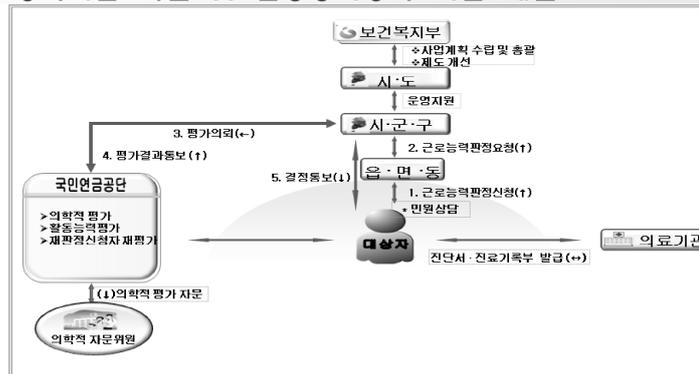
추진과제 흐름도



## 1 대상 :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

### 1. 근로능력판정 체계 개선

- ◎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12.12), 객관성·전문성 향상
  - ▣ 한의학적 평가기준 마련 및 활동능력평가 기준 개선



## 1 대상 :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

### 2. 취업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 지원 확대

- ◎ 저소득층 빈곤탈출 지원 및 빈곤위험층의 사전예방적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 지원 대상 확대
  - ▣ 취업수급자(12.1만명)
    - 임시·일용직 → 취업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희망자)
  - ▣ 차상위층 확대 : 차상위 제한 완화, 지역별·유형별 완화 방안 마련
    - 취업지원 프로그램 확충, 성과지표 개발

## 1 대상 :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

### 3. 맞춤형 자립경로 설계 지원

#### ◎ 맞춤형 자립경로 제시



## 1 대상 :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

### 4. 사례관리 강화

- ◎ 연령별, 가구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복지서비스 및 교육훈련 제공
- ◎ 취업적성평가 개선 (→ 자활역량평가, 고용부 협의)
- ◎ 1:1 맞춤형 자활프로그램 배치 지원

< 자활역량평가에 따른 자립 프로그램 배치 지원 >

자활역량평가 결과		참여 사업	실시 기관
자 활 역 량 평 가	70점 이상 • 집중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센터
	69~45점 • 근로능력강화	희망리본 자활근로 (시장참여형, 사회서비스형)	광역자활센터, 민간기관 지역자활센터
	45점 미만 • 근로의욕증진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지자체

## 2 프로그램 : 취·창업지원 강화

### 1. 희망리본(성과중심 자활사업) 본 사업 실시

- ◎ (주진현황)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희망리본과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및 조정('12.6월, 총리실)
  - ▣ 취업적성평가 항목, 점수를 고용부와 협의하고, 희망리본 타겟 대상 선정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등으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차별화
- ◎ (주진계획) 희망리본 시범사업 → '13년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대상 지역·인원을 확대하고,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통한 사업 내용 개선
  - ▣ '12년 7개(4천명) → '13년 17개(1만명) 광역 지자체 대상 확대
  - ▣ 중앙자활센터 : 모니터링 · 지원체계 강화
  - ▣ 사업수행자 : 복수 경쟁체제 도입, 법인

## 2 프로그램 : 취·창업지원 강화

### 2. 자활기업(공동체) 지원 체계

#### ◎ 자활기업 지원 활성화



#### ◎ 7대 전국 자활기업 발굴 · 육성

- ▣ 배송(정부양곡, 영양플러스 등), 집수리(주거현물, 에너지효율사업 등), 유통(서로좋은 가게 등)사업 등 자활기업 주력 7대 분야 발굴·육성

## 2 프로그램 : 취·창업지원 강화

### 3. 광역형 ·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활성화

#### ◎ 새로운 자활사업 프로그램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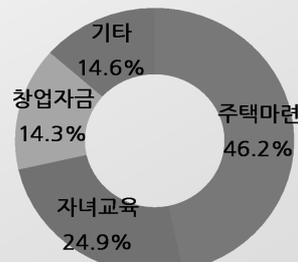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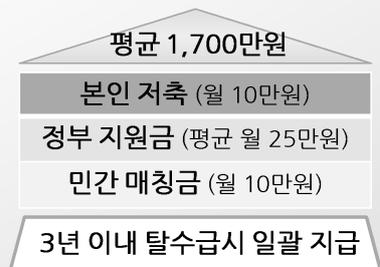
- (광역형) 기초단위의 자활사업 연계 조정, 사업추진방식 효율화를 통해 추진되는 전국 또는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 (지역특화형) 농어촌, 도농형, 도시형 등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사업 특성화, 아이템 도입 등을 위해 실시하는 지역 단위의 자활사업

## 3 근로유인 : 일할수록 유리한 인센티브 제공

### 1.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

####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확대 : 일반 시장 취·창업 수급자

- ('10년) 1만 → ('11년) 1.5만 → ('12년) 1.8만
- ('13년) 3.2만 가구 지원 예정
- < 지원금 희망 사용 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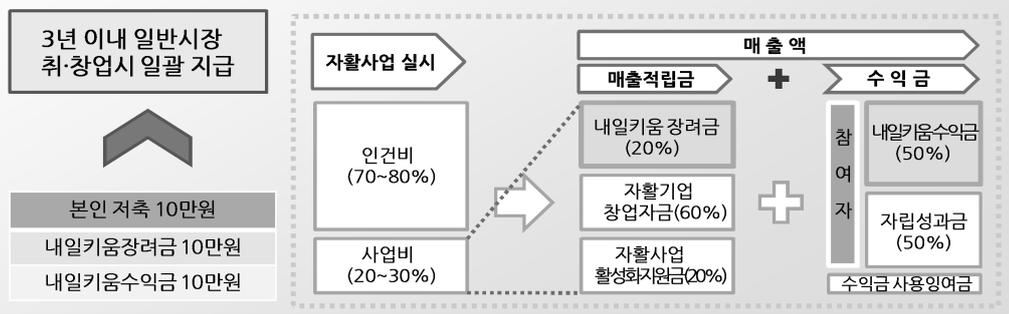
\* 가입자 패널 조사 결과('11.12)

## 3 근로유인 : 일할수록 유리한 인센티브 제공

### 1.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

◎ 내일키움통장 도입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13년, 2천명)

- (내일키움장려금 → 중앙자산키움펀드) 시장진입형(1:1), 사회서비스형(1:0.5) /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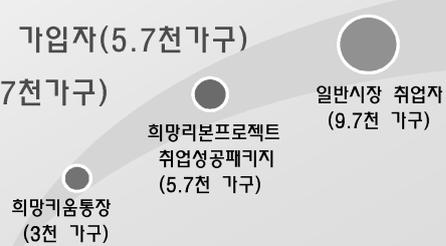


## 3 근로유인 : 일할수록 유리한 인센티브 제공

### 2. 이행급여 대상자 확대

◎ 탈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되는 이행급여 (의료·교육급여) 지원 대상 확대

- ('11년) 희망키움통장(3천가구)
- ('12년)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 가입자(5.7천가구)
- ('13년) 일반시장 취업자 확대(9.7천가구)



## 4 자활인프라 : 인프라 활성화 도모

### 1. 자활인프라 개편 : 다양화

- ◎ 중앙-광역-지역자활센터 역할 및 기능 정립
- ◎ 유형별 성과목표 설정·평가를 통한 자활인프라 지원·육성
  - 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 평가점수 저조기관 개선요구 및 경영 지도, 지정취소 실시
- ◎ 자활주진 인프라 다양화
  - 사회적 경제 영역에 우선 개방
  - 영리 민간기업 개방 검토

## 4 자활인프라 : 인프라 활성화 도모

### 1. 자활인프라 개편 : 다양화

- ◎ 자활연수원 건립 추진 (설계완료, 시공 '13.1~'14.6월)
  - 충북 충주시 소재, '14년 하반기 개원 예정



## 4 자활인프라 : 인프라 활성화 도모

### 2. 자활기금 활성화

- ◎ 자활기금 활성화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자활경로 지원, 민간기관 기금운용 위탁, 성과분석 등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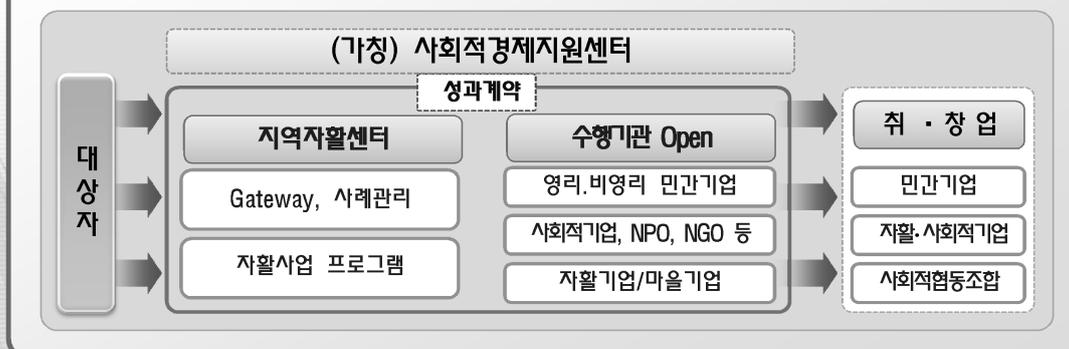
### 3. 자활통계·회계관리 시스템 및 성과지표 개선

- ◎ 자활통계 · 회계 시스템 통합관리 체계 구축
  - 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망 등을 연계·활용
  - 자활근로사업단 · 자활기업 회계관리 강화
- ◎ 자활사업 신성과지표 개발·적용
  - 근로의욕, 탈수급 의지 제고, 사회통합 효과 등의 성과 측정

## 4 자활인프라 : 인프라 활성화 도모

### 4. 사회적경제 연계 자활사업(시범사업) 추진

- ◎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학습 · 취업기회 제공,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민간기업 등을 통한 취 · 창업 지원(사업아이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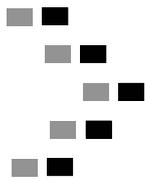


자활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안)

# 감사합니다







## **2. 2013년 자활사업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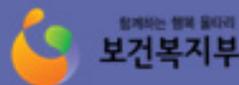
**(2013년 자활사업안내 주요개정 내용)**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 13년 자활사업안내 주요 개정내용

www.mw.go.kr



## 2013년 자활사업 규모

### 2013년도 자활사업 예산

- 2013년 정부예산(안) : 5,796억원 (전년 5,333억 대비 8.5% 증가)
- 자활근로 대상자 전년 동(66천명) : 3,969 → 4,099억원
- 희망리본 대상자 확대(4→10천명) : 90 → 223억원
- 희망키움통장 확대 (18 → 32천명) : 374 → 435억원
- 근로능력심사 및 평가운영 : 70 → 99억원
-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 72 → 150억원
  - 자활연수원 건립비 99억원 반영
  - 광역자활센터 확대(7 → 10개소)
- 자활통계시스템 선진화(신규) : 3억원

# 13년 주요 개정내용

##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근로능력판정 개선
  - 근로능력평가의 국민연금공단 의뢰('12.12.1)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변경
- 자활역량평가표
  - 명칭 변경 : '취업적성평가표' → '자활역량평가표'

# 13년 주요 개정내용

##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현행 자활역량평가 표			자활역량평가표 개선안			
평가항목	등급	점수	평가항목	등급	점수	
연령 (30)	18~35세	30	연령 (30)	18~30세	30	
	36~65세	20		31~43세	20	
	66세 이상	10		44~65세	10	
66세 이상				6		
건강상태 (25)	양호	25	건강상태 (20)	양호	20	
	보통	15		보통	10	
	보통이하	6		보통이하	보통이하	6
직업이력 (25)	상	25	직업이력(20) (새부기준을 조정)	상	20	
	중	15		중	10	
	하	6		하	6	
재량점수(20)		20		구직역구 (10)	상	10
가점 사항 (20)	1년내 직전경력	있음	10	중	7	
		없음	0	하	6	
	3년내 고용 프로그램 참여	있음	10	가구여건 (10)	상	10
		없음	0		중	7
			하	6		
			재량점수(10)		10	

##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자활사업종류	실시기관구분	기 준	판정 대상자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	집중취업지원 대상자 (70점 이상)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희망리본	◆ 취업 욕구가 강한 사람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시장진입형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가 높은 자 ◆ 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 자	근로능력강화 대상자 (45~69점)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 자 ◆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 가능한 자	근로의욕증진 대상자 (45점 미만)

5

##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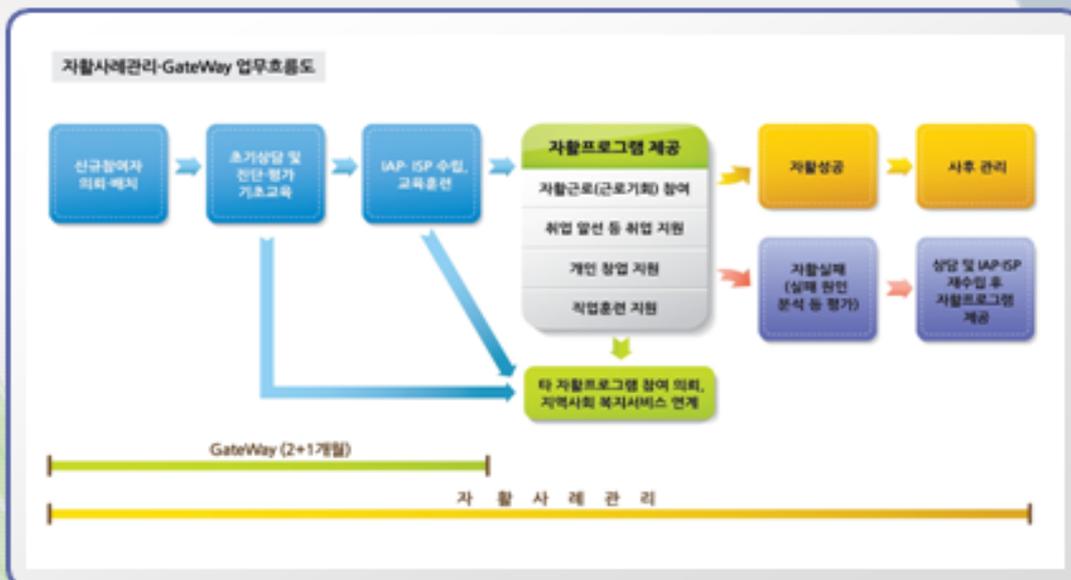
- **자활사업 조건제시 유예기준 개선**
  - 도서지역 : 관공서가 없어 자활사업 수행이 곤란한 섬지역
  - 벽지지역 : 관공서로부터 2시간(대중교통 이용) 이상의 거리로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지역
- **자활사업참여 조건불이행자 관리 강화**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조건불이행률' 추가
  - 조건불이행률이 유난히 높은 지자체 현장점검 실시

6

## 2 자활사례관리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인큐베이팅'과 '자활사례관리'사업의 개념이 유사하여 명칭을 '자활사례관리'로 통합 운영
  - 자활사례관리는 GateWay 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에게 근로의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 평가를 총괄하는 개념
  - 기존 자활인큐베이팅 과정을 'GateWay' 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된 참여자의 상담, 기초교육, IAP, ISP 수립

## 2 자활사례관리



## 2 자활사례관리 - GateWay

- 운영기간 : 2개월 이내 원칙(단, 1개월에 한하여 연장 가능)
  - 2개월을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GateWay과정을 모두 수행하면 2개월 이내에 자활프로그램 제공
- GateWay 과정에서 사업단 운영(자활근로) 금지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70:30으로 하되, 사업비로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 임대비용으로 사용 불가
  - 자활근로예산에서 GateWay전담관리자 인건비 우선 지급
  -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에 출석한 날에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의 1일치 급여를 지급(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시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GateWay 과정 수행은 근로가 아니므로 주차, 월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사회보험 가입 대상도 아님

9

## 3 자활근로 사업

- 참여자의 자활근로 연속 참여기간을 3년으로 제한
  - 단, 하위유형(사회서비스형)에서 상위 유형(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 가능
  - '13년 1월 1일부터 참여기간을 계산, 근로유지형은 적용 제외
-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참여비율' 추가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 비율이 유난히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실시 예정

10

## 3 자활근로 사업

### ④ 차상위자 참여 비율 제한 완화

구분	차상위자 참여비율 ('11.6월 기준)	'12~'14년 공역비율 목표치		
		변경 전(前)	→	변경 후(後)
도시형	21.1% (3.7% ~ 77%)	20%	→	30%
도농복합형	35.4% (8.0% ~ 75.2%)	25%	→	40%
농촌형	42.8% (8.8% ~ 79.8%)	35%	→	50%

※ 단, 지자체 판단에 따라 차상위자 참여 비율을 10% 범위내에서 추가 조정 가능

11

## 3 자활근로 사업

### ④ 자활근로 급여 단가인상

-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단가를 '12년 대비 3~5% 인상

구분	2012년	2013년	증감액(%)	비고
시장진입형	30,550	31,560	3.3%	1일 8시간
인턴·도우미형	29,870	31,560	5.7%	1일 8시간
사회서비스형	27,300	28,210	3.3%	1일 8시간
근로유지형	19,600	20,340	3.8%	1일 5시간

※ 인턴·도우미형 중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급여 단가 28,210원 적용

12

## 3 자활근로 사업

- 자활급여 지급방식 개선
  - (필요성) 자활참여자의 최저생계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
  - (방법) **자활급여통장의 압류방지**
  - (압류방지를 위한 전제 조건) 지역자활센터 자활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주체를 현행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자체로 변경
  - (문제점)
    - 지자체 자활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가중
    - 행복e음시스템 개선에 상당기간 소요
    -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주체(지자체 또는 지역자활센터)
  - (향후 추진 계획) 문제점 검토 및 의견수렴 후 **하반기부터 추진 예정**

13

## 3 자활근로 사업

- 자활근로 무료간병사업 내용 삭제
  - 자활근로사업 예산 및 매출액 기준 등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도우미형 자활근로 개선

구분	대상	참여 기간
복지도우미	<b>2012년 7월 1일부터 수급자, 차상위자 모두 신규 참여 불가</b>	
자활도우미	수급자(○) 차상위자(×)	<b>1년</b>  (단, 시·군·구청장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가능)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수급자(○) 차상위자(○)	

14

## 3 자활근로 사업

### 주차수당, 월차수당

구분	기 존	변 경
주차수당	○ 주중에 사업이 시작되어 실 근로 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 주차수당 발생(×)	○ 주중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출근일부터 기산하여 1주일(5일) 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차수당 발생(○)
월차수당	○ 월차수당 지급 제한(×)	○ 월차수당은 1년간 6월 이내에서 지급 - 월차휴가 사용 적극 유도

### 자활근로유형 명칭 변경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사회서비스형’

‘인턴형’ → ‘인턴·도우미형’

## 3 자활근로 사업

### 자활근로 유형 재분류

- 복지·자활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인턴형 자활근로를 인턴·도우미형으로 분류

유형 분류	현 행	변 경
시장진입형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복지도우미, 자활도우미, 사회복지시설도우미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	
근로유지형		

# 13년 주요 변경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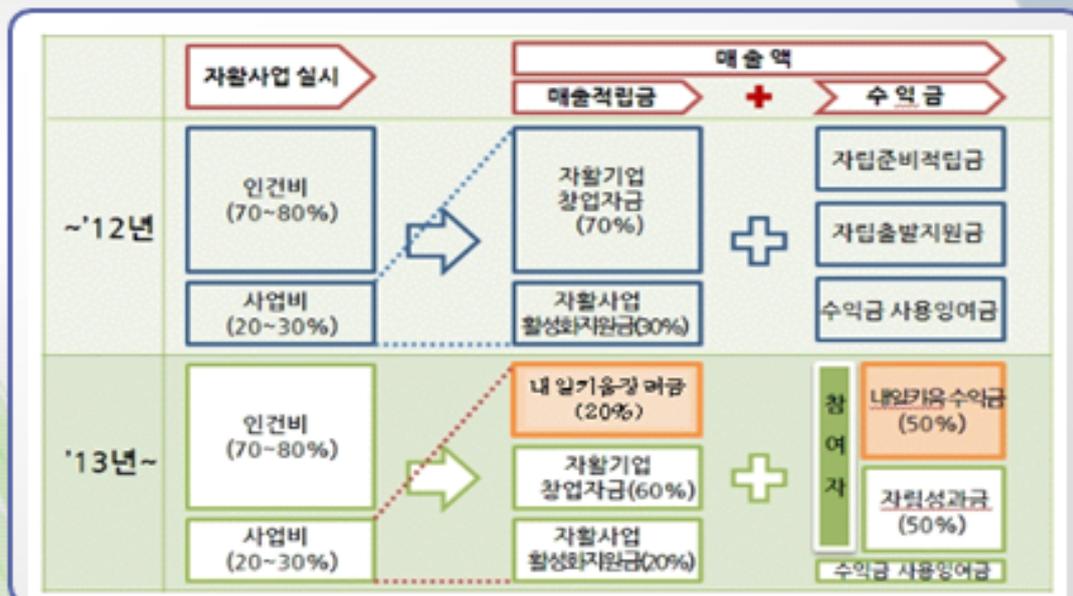
## 3 자활근로 사업

### ● 자활근로 시범(파일럿)사업단 운영

- (목적) 참여자에게 **다양한 업종의 근로기회 제공과 GateWay 과정에서 사업단 운영 금지**
- (방식) 지역자활센터는 연초 사업의 대략적인 사황에 대해서만 시.군.구의 사업계획 사전 승인을 받고, 이외의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황은 시범사업단 운영 이후 시.군.구에 사후보고**
  - \* 사전 승인 사황 : 시범사업단 수 및 참여자 수, 시범사업단 지원 예산 규모
  - \* 3~6개월 운영 후 정식 사업단으로 전환 또는 폐지
- (규모) 전체 참여자의 15% 이내에서 운영
- (예산)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 70:30
  - 시설,장비 투자 등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운영 불가

# 13년 주요 변경내용

## 4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관리



## 4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관리

- ④ 자립성과금 : 사업단 매출액 중 자립준비적립금을 충당하고도 남은 수익금의 50% 금액을 해당 사업단 참여자에게 지급
  - 자립준비적립금 및 자립충발지원금은 탈수급 등 지급사유 발생시 일시에 지급하였으나, 자립성과금은 지급사유 없이 수익금 발생시 분기별 지급
  - ※ 단, 분기별 가결산시에는 자립성과금의 70%만 지급하고, 연말 결산시 100% 지급
- ④ 2013년 1월 부터 자립준비적립금과 자립충발지원금은 폐지
  - 2012년 12월 까지 적립된 자립준비적립금은 탈수급 등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 자립충발지원금은 2012년 12월 까지 적립한 수익금에서 1년 이내에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 4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관리

- ④ 시장진입형 사업단 매출액 기준 개선
  - 총 사업비 대비 20% 매출액 발생 → 30% 매출액 발생
- ④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매출액 기준 개선
  - (원칙)총 사업비(인건비 포함) 대비 10% 매출액 발생 기준 설정
    -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의 판단하에 1년간 운영 연장 가능
  - (예외) 일자리 제공과 함께 참여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취·창업을 준비하는 업종은 매출액 기준(10%)을 적용하지 않음
    - 단, 참여자 참여기간을 1년으로 제한(시·군·구 판단하에 1년 연장 가능)하고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90:10으로 제한
    - ※ 업종은 간병서비스, 장애인통합보조교육, 농촌형 지역자활센터 정부양곡배출으로 한정

## 13년 주요 변경내용

### 5 광역·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지원 강화

- 광역·지역특화형 자활근로사업단의 초기 6개월간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50:50으로 지원 가능

※ 단, 해당 지자체의 신청 및 중앙자활센터의 의견 필요

### 6 희망리본사업 전국 확대

- '13년도 희망리본사업의 전국 단위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모델, 성과급체계 개편 등 사업내용 개선

- '12년 4천명, 7개 시·도 → '13년 1만명, 17개 시·도 확대 예정

21

## 13년 주요 변경내용

### 7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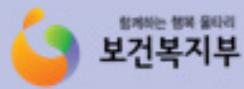
- 희망키움통장 적립·지원 방식 개선 (월 저축액을 10만원으로 일원화)
- 사후관리 개선
-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도입

### 8 자활인프라 운영·관리 체계 개선

- 광역자활센터의 법적근거('12년 8월 시행)마련에 따라 광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지침(안) 마련
- 지역자활센터 회계투명성 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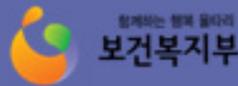
22

# 감사합니다



2013년도 자활지원정책 이해 역량강화교육  
(2013.2.6~7)

## 제2장 자활사업 지원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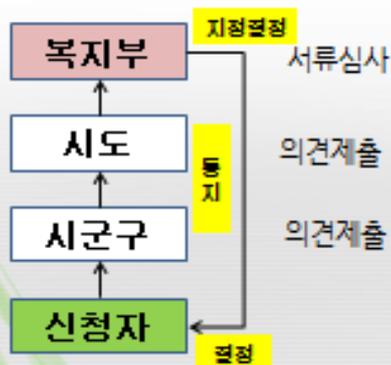
### 1.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변경 및 취소(206P) 희망사다리

#### 1. 지정

##### 가. 신청

-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 나. 지정 신청 및 절차



※ 다수의 신청인이 있을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거쳐 하나의 신청만을 선정(340p)

# 1.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변경 및 취소(208P) 희망사다리

## 2. 운영주체의 변경

### 가. 신형 법인 등의 변경

- 지역자활센터는 양도·양수할 수 없음 → **정취소가 원칙**
-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운영주체 변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새로운 법인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단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
- 필요서류 : 시군구 검토의견서, 지정서 반납 및 반납사유서, 신규 기관의 선정 경과보고서, 조사 의견서, 센터장 이력서 등

### 나. 센터장의 변경

- 운영 법인·단체 :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추천  
\* 센터장 변경(교체) 사유서, 신규자 선정 경과보고서, 책임자 조사 의견서
- 시군구청장 : 변경(교체) 적정성 여부를 최종 처리 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다. 주소 변경 등 경미한 경우 사유 등을 적시 하여 복지부에 보고

# 1.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변경 및 취소(210P) 희망사다리

## 3. 자활센터의 지정 취소

### 가. 지정취소 대상

-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 자활센터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
- 지도·점검 결과 자활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 보장기관의 정당한 지지에 불응할 경우

### 나. 지정취소 절차

- 평가 또는 지도·점검결과 지정취소 대상 선정
- 대상 센터에 대한 **현지조사** 및 **의견 청취**
- 대상 자활센터 **관할 시도** 및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
- **지정취소 등 결정**
- 장관은 지정취소 시 그 사유를 명시 **센터장, 시도, 시군구청 통지**

### 가. 예산 · 결산의 총괄 관리

- **【예산편성의 승인】** 지역자활센터의 편성된 예산안은 운영지원위원회 회의 심의후 보장기관의 장이 승인함으로써 확정
- 관련 지침 내용 : 예산 중 500만원 이상이 변경 된 경우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 및 500만원 미만은 사후 보고[215p],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의 제출[217p]

### 나. 예산의 편성

- **【세입예산】** 국가 ·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금, 법인전입금, 자활근로 사업비, 자활사업 사업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 기타 수입
- **【세출예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자활사업단별 지출[자활근로 사업비, 자활근로사업단 수익금]로 구분 관리
- **【합리적 예산 편성】**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각의 사업계획을 고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적정비율을 유지
  - 특히 운영비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다. 수입과 지출

- 수입의 분류 : 보조금 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후원금, 매출액 등
- 지출은 사전에 품의가 있거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후 집행되어야 함
-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 등에 의한 지출이 아니라면 금융기관에 의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 부득이한 경우 현금에 의한 지출 가능(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 실비 변상적 여비교통비 등)

### 라. 후원금 관리

- 후원금 영수증 발급,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 내용 공개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2. 지역자활센터 운영 \_ 예산의 편성(217P)

희망사다리

### 마. 예산의 편성 및 지출의 정보시스템 관리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예·결산 및 지출 관리
- ➔ **시군구** : 운영비보조금, 자활근로사업, 기타 수탁사업 등 지역 자활센터의 모든 사업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 바. 수익금의 모법인 전출 금지

- 바우처사업 등 지역자활센터 자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기관의 모법인에 전출할 수 없도록 규정 ➔ 경영의 안정성 도모

### 사. 연가규정 준수

- 연가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등

## 3. 지역자활센터 지원(218P)

희망사다리

### 1.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 (주기) 운영규모 평가주기 3년
- (규모결정) 시군구별 조건부수급자 수, 자활센터 참여수급자 등  
〈2013년도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현황〉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247	64	123	60

### 2.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및 사업의 우선위탁

#### 가.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 지자체 소유 건물, 토지 등이 있는 경우 자활센터에 무상으로 임대 지원

#### 나. 지자체 실시사업의 우선 위탁구매

- 집수리, 간병도우미 등 자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자활센터에 우선 위탁,
-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단 생산품 우선 구매 적극 지원

**1. 지역자활센터 평가**

- **(목적)**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을 평가
- **(유형별 평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 매년 성과평가 실시

**【지역자활센터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른 유형분류 현황】**

구분	계	확대형	표준형	기본형
계	247	64	123	60
도시형	126	49	59	18
도농복합형	55	14	33	8
농촌형	66	1	31	34

- **(평가대상기간)** 매년 1.1 ~ 12.31
- **(평가지표)** 공통지표와 특성화 지표로 구분하여 평가(100점만점)
  -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통지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지표로 구분

**1. 지역자활센터 평가**

- **(평가기준)** 자활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정도, 센터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 **(평가결과 활용)**

- 자활사업 제도개선 등에 반영하여 발전방안 마련
- 지역자활센터 지정취소 및 인센티브 지원 반영
  - 평가 우수기관 및 종사자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 반영 가능
  - 미흡기관(하위10%): 컨설팅 지원, 지도감독 강화, 삼진아웃제 적용
  - 삼진아웃 : 성과평가결과 5년 동안 3회에 걸쳐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관대상, 1차 개선요구컨설팅, 2차 기관 경고, 3차 지정 취소

#### 4. 지역자활센터 평가 및 지도·감독(222P)

주체	복지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시기	매년	자체일정
대상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주기	-	10개소 미만은 연 1회(10개소 이상은 2년 1회)
추진 방향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자 활담당공무원 참여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후 필요한 경우 주의, 시정 등 조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활센터 운영 : 인사, 운영비 보조금 집행, 사무관리, 시설안전 등</li> <li>· 자활근로 사업 : 참여자 관리, 사업비 집행, 사업단의 매출, 수익금 관리 등</li> </ul>	

#### 5. 광역자활센터 - 목적, 법적근거(247P)

##### 1. 목적

- 중앙-광역-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자활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활사업의 내실 및 자활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형성

##### 2.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3('11.12월 마련)

\* 센터수 : 7개소 운영(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 3. 추진경과

- \* 2004.4월~2006.12월:3개지역(대구,인천,경기) 시범사업 운영
- \* 2007년 : 자활사업 전달체계로 구성
- \* 2008년 : 3개소 추가지정(부산, 강원, 전북)
- \* 2010년 : 1개소 추가지정(서울)
- \* 2011년 : 법적근거 마련('12.8월시행)
- \* 2013년 : 3개소 추가확대 계획(기 설치되지 않은 지역)

### 1. 대상지역 및 신청기관

- (대상지역)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 (신청기관) 광역자치단체 또는 법인

### 2. 기준

- (지역적 여건) 자활수요 규모, 지역자활센터수, 지리적 환경적 여건 등
- (광역자치단체 추진의지) 광역자치단체의 대응투자 규모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계획
- (신청자의 사업 수행능력) 자활사업 수행경험, 기간, 센터장 및 실무자의 전문성, 지역내 자활인프라 구축 능력 정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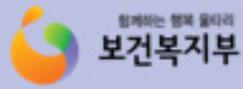
### 3. 운영방식 : 성과계약 방식(계약기간 3년)

- (계약당사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자활센터장

### 4.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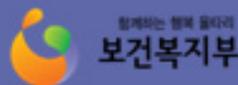
- (사업공고 및 신청) 2월
- (신청기관 심사) 3월
  - \*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실사, 3차 면접심사
  - \* 광역시와 광역도가 인접되어 있는 경우 지역자활센터 수가 적은 광역시는 인접 광역도의 사업까지 포함하여 수행가능
- (선정) 3월 중 : 광역자활센터 운영주체 선정

# 감사합니다



# 2013 자산형성지원 사업 (희망-내일키움통장)

www.mw.go.kr



東亞日報

2013년 09월 17일 (수)  
13페이지

## 2년 속성... 무르익는 1만6160명 희망통장

### ■ '희망키움통장' 내년 4월부터 본격 인기

일용직으로 서비스 일을 하는 김성근 씨(가명·40)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아이 둘과 아내까지 세 식구. 월 110만 원의 수입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가난은 천행(天幸)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런 김 씨에게 재기의 기회가 왔다.

2010년 4월 보건복지부, 시외복지공동모금회, 하나은행이 함께 시작한 '희망키움통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부터다.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저소득층이 매달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저축금을 최대 6배의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 물론 기초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김 씨는 4개월 뒤,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이를 악물었다. 복영 속에서 아이스크림 한 번 사먹지 않았다. 아이스크림 한 개가 뭐 그리 대수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릴때는 한 봉 한 봉이 중요했다.

그는 매달 10만 원을 희망키움통장에 넣었다. 통장에는 근로장려금 30만 원과 민간기업의 매칭지출금 10만 원이 함께 들어왔다. 4.7%의 은행 이자도 붙는다. 만기가 되는 내년 8월 김 씨는 1900만 원을 손에 쥘다.

희망키움통장 프로젝트 참여자 10명 중 8명이 김 씨처럼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예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 상반기 이후 1만여 가구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말 기준으로 80.8%가 계속 참여

기초수급자 월10만원 저축 정부 등 보태 3년 뒤 1900만원 중도 포기해도 손해 없어

참여유지비율 80% 넘어 목돈 사용처 '주택구입' 1위

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는 올해 5월 기준으로 1만6160명. 적립 금액은 875억 원에 이른다.

가입자인 오미숙 씨는 "2010년부터 허리피를 풀러대 저축을 하느라 생활이 빠듯하지만, 지금은 행복하다. 예년에는 꿈을 꿀 수 없었는데 지금은 피부미용실 가게를 차려 아이들과 자립하는 내 모습을 그릴 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이전의 저축실태

매달 정기적으로 저축했다	15.8%
여유가 있을 때 저축했다	25.9%
저축을 해본 적이 없다	58.3%

###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하는 목표

주택 구입 및 임대료 보태겠다	40.0%
자녀교육비에 활용하겠다	22.2%
창업자금을 마련하겠다	14.5%
할수준 저축을 하고 싶다	8.6%
기타	14.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가 주목 받는 이유는 빈곤층이 스스로 일어 서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다른 대책은 자활보다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

가입자 모두가 계약 기간인 3년을 채우고, 빈곤에서 벗어나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비 교육비 주택비를 지원받지만 여기서 벗어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목돈 2000여 만 원을 손에 쥐는 대신 어떤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정부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중도 포기 비율을 50% 정도로 추정한다. 문 제점을 줄이기 위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도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에게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2년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올 만20년 된 딸이, 딸은 딸과 "주택 구입 및 임대료 보태고 싶다 (40%)는 답이 가장 많았다. "자녀 교육비에 쓰고 싶다(22.2%)", "창업 자금을 마련하고 싶다(14.5%)는 대답이 다음이었다. 여들은 힘들지만 행복하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에,

노지현 기자 [lnh04@koreapop.com](mailto:lnh04@koreapop.com)

## 기초수급 못 받을까 봐... 희망키움통장 43% 해지할 듯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목돈을 모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한 가구 중 절반가량이 포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부연구위원 등이 '보건·복지 이슈&포커스'에 공개한 '희망키움통장 운영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한 1만1014가구 중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중도해지 가구는 2124가구(19.3%)였다. 참여 유지비율이 월 평균 약 1.25%포인트씩 감소하고 있어 이 추세대로라면 2010년 가입자의 사업이 끝나는 2013년쯤에는 4723가구(42.9%)가 중도에 해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액(5만~10만원)과 같은 금액을 민간과 1:1 매칭 방식으로 적립해 3년 후

탈수급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3년 이내 탈수급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고 통장을 해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만 받는다. 현재 약 1만6000가구가 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중도해지자 중에는 탈수급에 성

수급자 3년 후 탈수급 조건  
월입금액만큼 1:1로 더 적립

"탈수급 전제, 오히려 부담돼  
자립 가능할지도 불확실..."

공하거나 형편이 어려워져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희망키움통장의 전제조건인 '탈수급 및 자립'에 대한 불안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중 27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41.8%가 "희망키움통장 신청 당시

탈수급을 전제로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 중 60%가량은 "3년 뒤 탈수급이 부담스럽다"고 고민했고, 25%가량은 "탈수급에 성공해도 실질적으로 자립이 가능할지 불확실하고 불안하다"고 했다.

현재 기초수급에서 벗어나 자상 위계층이 되면 현금-주거급여를 비롯한 생계보조금, 전화·인터넷요금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기초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을 계속 받기 위해 취업을 포기하고 기초수급 상태에 안주하려는 폐단이 있다.

최현수 부연구위원은 "희망키움통장의 본인저축액 선택 범위를 늘리거나 적립기간을 연장해 충분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시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에 근로장려세제를 우선 적용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e@chosun.com](mailto:je@chosun.com)

## 희망키움통장 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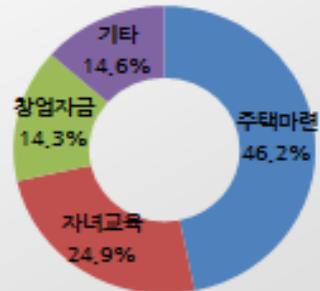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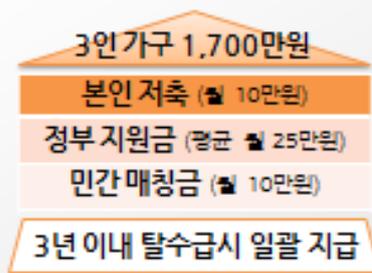
희망사다리<sup>본</sup>

### 1 개요

- 근로능력 있는 빈공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활성화를 위해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운영('10.4월~)**
- **탈수급을 요건으로**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통합적 모델(total solution)  
 ➔ '일하는 복지(workfare)' 구현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여행급여(교육, 의료)특례 인정('11년~)**

##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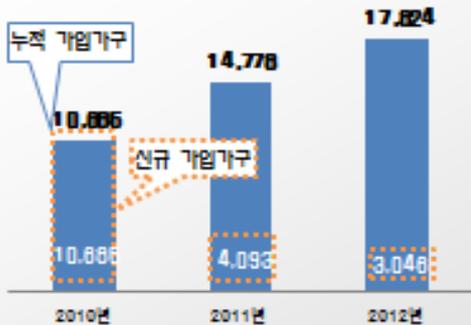
< 희망키움통장 사업개요 및 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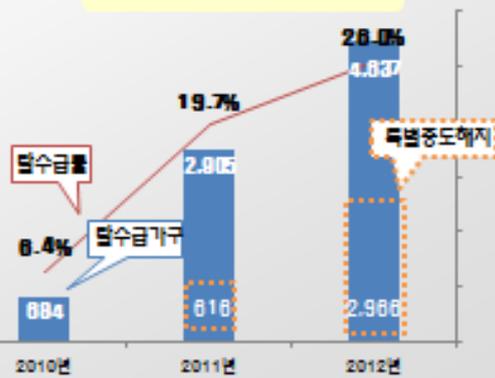
\* 가입자 패널 조사 결과(11.12)

## 2 가입가구 및 탈수급 현황('12년말 기준)

<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구 >



< 희망키움통장 탈수급 가구 >



## 3 2013년도 개선 방향

- ③ 일반시장 취·창업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 확대(신규 14천 가구)
  - 10천(10년)→15천(11년)→18천(12년)→32천(13년)
- ③ 희망키움통장 정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소폭 조정
  - 4인 가구 이상 동일, 장려율 변경(1.05 →0.85)
- ③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에 최근 3개월 이상 성실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 (차상위 포함, 인턴·도우미형/근로유지형 제외)

## 1 희망키움통장 적립 지원방식 개선

- ③ 일하는 수급자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단,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
  - ※ 가구원 중 신청시 실제 자활장려금을 받고 있는 대상소득은 제외
  - ※ 자활 특례자, 시설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소득상한선까지 지원 가능
- ③ 주요 변경사항
  - (본인) 월 저축액을 10만원으로 일원화
  - (정부) 근로소득장려율을 조정(1.05→0.85)하고, 4인 가구 이상은 4인 가구 최대장려금으로 적용
  - 희망리본 참여자에 대한 소득 상한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
  - ※ '13년도 신규 가입가구부터 적용 (既('10~'12년) 가입가구는 기존 조건 유지)

## 1 희망키움통장 적립·지원방식 개선

<신규 가입자 정부 지원금 산정액>

$$\text{근로소득장려금} = [(\text{가구중소득} - (\text{최저생계비} \times 0.6))] \times 0.85$$

< '13년 최저생계비 및 소득 기준 상 - 하한선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원/월)	672,188	974,231	1,290,315	1,548,399	1,832,482	2,118,566
소득하한(원/월) <최저생계비 80%>	537,750	779,385	1,032,252	1,238,719	1,465,986	1,694,853
최대 근로소득 장려금	'13년 가입가구	195,000	331,000	429,000	528,000	528,000
	또('10-12년) 가입가구	240,000	409,000	529,000	649,000	770,000
소득상한(원/월) <최저생계비 150%>	1,008,282	1,461,347	1,935,473	2,322,599	2,748,723	3,177,84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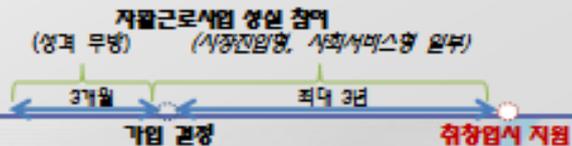
## 2 희망키움통장 사후관리 강화

- ① 희망키움통장 3년 만기 도래 ('10년도 가입 10,685가구 중 7천여가구)
- ② 지원금(정부·민간) 수령 후 근로유인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필요
  - 자활근로 사업 참여 일정 기간(1년) 제한
  - 수급자 재신청시 지원금의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원금액을 '기타 산정재산'으로 처리

10

## 3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도입

- ③ (현황) 희망키움통장은 일반시장 취·창업자 중심으로, 자활장려금을 받고 있는 대상소득 제외
  -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유인 제고 및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
  - ⇒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도입('13.2월~)
- ③ (대상) 최근 3개월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차상위층 포함)
  - ⇒ (지금)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 요건(탈수급 포함)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발생) 사업단
    - 사회서비스형 중 요건 미충족 사업단, 인턴·도우미형 및 근로유지형 제외
    - 일반시장 취·창업 후 요건 충족시 희망키움통장 우선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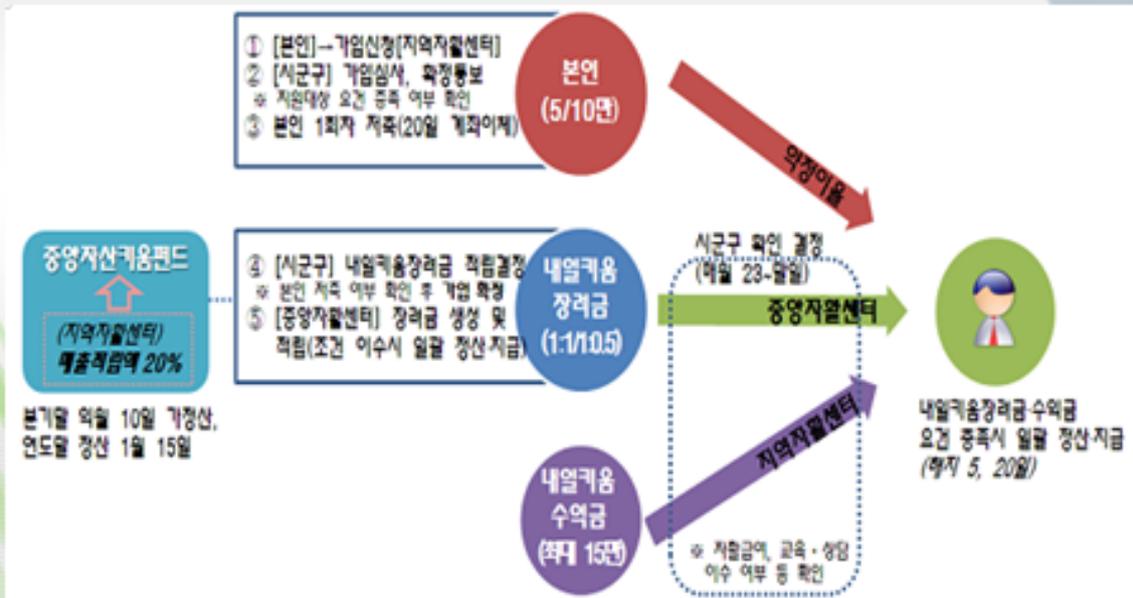
11

## 3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도입

- ③ (본인) 월 5만원, 10만원 중 선택 (참여기간 중 변경 불가)
- ③ (매출적립금) '내일키움장려금' 1:1 (시장진입형), 1:0.5 (사회서비스형)
  - 매출적립금의 20%를 '내일키움장려금'으로 우선 적립하고, '중앙자산키움펀드' 조성
- ③ (수익금) '내일키움수익금' 사업단별 지원(월 평균 8만원)
  - 사업단별로 수익금을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금으로 5:5 적립, 사업단별로 (통장 가입자수×월15만원×12개월)을 한도로 내일키움수익금으로 적립, 통장 지원 요건 충족시 일괄 지급

12

## 3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도입



## 3 자활근로 참여자 대상 내일키움통장 도입

**< 자활근로사업단 매뉴얼 - 수익관리 개선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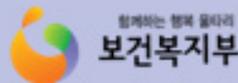
	자활사업 실시	매출액	
		매출전입금	수익금
~'12년	인건비 (70-80%) 사업비 (20-30%)	자활기업 창업자금 (70%) 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30%)	자립준비직필금 자립출발지원금 수익금 사용일여금
	인건비 (70-80%) 사업비 (20-30%)	내일키움 장려금 (20%) 자활기업 창업자금(60%) 자활사업 활성화지원금(20%)	참여자 내일키움수익금 (50%) 자립성과금 (50%) 수익금 사용일여금

## 4 주요 개선사항 비교

	희망키움통장(현행)	희망키움통장(개선)	내일키움통장(신규)
대 상	일반시장 취·창업자 (최저생계비 60%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최근 3개월 생실 참여)
지원 조건	3년 이내 탈수급		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
가입 규모	18천 가구	32천 가구 (13년 신규 14천)	20천명 (차상위 포함)
본인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10만원	5만원 또는 10만원
정부 지원액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31만원)	근로소득장려금 (월 평균 25만원)	내일키움장려금 (본인 저축액 1:10.5 매칭)
추가 지원액	민간 매칭금 (본인 저축액 1:1 매칭)	민간 매칭금 (기부조상액에 따라 차등)	내일키움수익금 (월 평균 8만원)
실질 혜택	(3년 기준) 평균 2,0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1,700만원 적립	(3년 기준) 평균 1,100만원 적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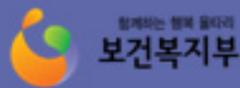
15

# 감사합니다



# 자활기업

www.mw.go.kr



## 자활기업

### 1 공통사항

'12. 8. 2일부터 자활공동체  
→ 자활기업 명칭 변경

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가능

## 자활기업

1인이 창업한 경우는  
개인창업으로 관리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최저임금이상  
수익금 배분 권고

2 자활기업 현황('12년말 기준)

전국 1,340개 자활기업에 9천여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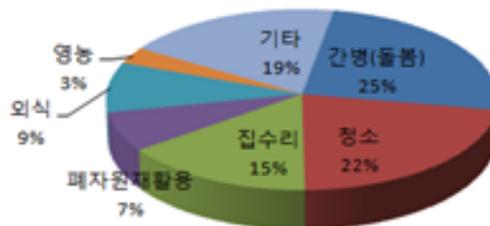
창업 당시 평균참여 5명(기초 3명 / 차상위 2명)

'12년말 기준 평균참여 6명(기초2명/차상위2명/일반1명)

월평균 임금 90만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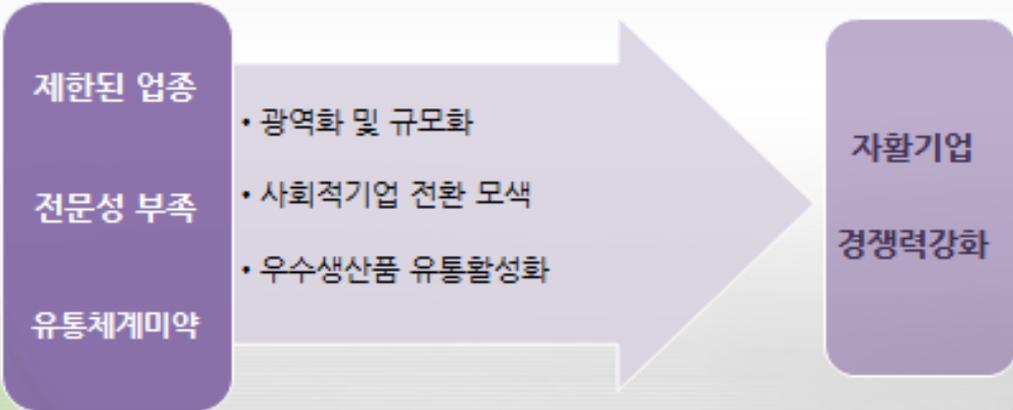
3 자활기업 업종별 현황('12년말 기준)

자활기업 업종별 현황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초기 개발한 5대 표준화사업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등)에 전체의 69% 집중

4 자활기업 향후 추진방향



5 '13년 자활기업 추진계획

- '13년 중 자활기업 사업현황 시스템 등록 관리
- 등록조사를 통해 자활기업 지원체계 강화
- 유망 자활기업 전국화, 광역화추진 / **쥬희망나르미**
- 자활기업 혁신지원단 운영

6 전국자활기업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 목적

전국단위 사업추진으로  
시장 경쟁력 확보

7 전국자활기업

기본  
방향

-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규모화  
경영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 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자립  
지원 활성화 도모
- 전국적인 사업망 · 규모화 분  
야우선 발굴

전국  
자활기업  
육성

### 8 전국자활기업 인정요건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  
포함 사업

- 인정기준 부합여부
- 사업계획 타당성
- 성공 가능성 등 검토
- 보건복지부 인정

전국  
자활기업  
인정

### 9 전국자활기업 지원

전국단위의 자활사업  
우선 참여 지원

자체 정관 및 규칙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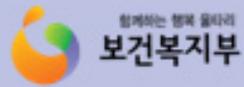
자활기업 및  
광역자활기업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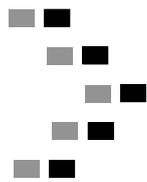
정부재정사업 발굴·연계  
전국단위 홍보·마케팅  
회계·경영컨설팅

자활사업단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지원

그 밖의 수급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 감사합니다





### **3. 중앙자활센터 2013년 사업추진 계획**

**이 시 우**  
(중앙자활센터 사무처장)



# 중양자활센터 2013년 사업계획



 재단법인  
중양자활센터

##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재단법인  
중양자활센터

목 표

“자활사업 성과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방향

1:1 맞춤형 참여자 자립지원 체계 추진

사회적 경제와 자활사업 연계 강화

제도적 발전과 자활사업의 지속가능토대 강화

중양자활센터 위상 및 역량 강화

(재)중양자활센터 | 사업목표/방향 01

## 7대 추진과제

1. 사회 통합형 모델 개발
2. 탈빈곤 프로그램 다각화 유도
3. 자활기업 경쟁력 강화
4. 성과관리 체계 확립
5. 교육체계 정립(연수원 운영) 및 자활사례관리 체계 강화
6. 정책대응 역량 강화
7. 자활사업 대국민 홍보 강화

## 01 |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자활사업 인프라(광역/지역) 성과관리

사업개  
요

- ✓ 광역자활센터(기존,신규)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 전환 진행
-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의 성과관리체계 마련

사업내용

- 2012년 성과평가 수행 및 사후관리 강화  
평가결과 분석으로 성과확산, 우수기관 인센티브 진행
- 2013년 사업중심 평가체계 전환  
광역자활센터 표준화를 반영하는 평가지표개선,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검증체계 확립
- 자활사업 평가업무 지원  
청소년 자활지원 프로그램 사업, 17개 시도 정부평가자료 검증 등

소요예산

104,500천원

## 01 |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성과관리 선진사례 관리도구 개발

#### 사업개요

- ✓ 자활사업 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평가지원(DB화)
- ✓ 자활통계 생산을 위한 기반마련

####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평가지표 개선에 따른 데이터 연계망 확대구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포이력 DB 정보 연계
- 공적 영역의 자활통계 생산을 위한 기반 마련  
형북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 소요예산

77,964천원

## 01 |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저소득층 용자지원사업 모니터링

#### 사업개요

- ✓ 사회적 금융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마련
- ✓ 희망키움뱅크 운영의 지도점검 강화 및 사후관리방안

#### 사업내용

- 사회적금융 모델 개발 및 마이크로크레딧 적용방안 마련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 적용방안 연구용역(1식)
- 사후관리를 위한 심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마련 및 지원  
수형기관 지도점검 등 현장모니터링, 직무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고통계 기능 개선  
기금관리 시스템 및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보고통계 기능 개선(1식)



#### 소요예산

60,716천원

## 02 | 사업개발 및 지원

### 사회통합형 자활사업 모델 개발

#### 사업개요

- ✓ 자활사업 모델 개발로 발전방향 다각화
- ✓ 정부재정 일자리 연계성 확대

#### 사업내용

- **사회통합형 자활사업 모델 개발**  
사회적경제 연계형, 정부재정 연계형, 민간기업 연계형
- **지역특화형 사업개발 지원 및 모니터링**
- **안정적인 정부재정사업 관리**  
정부양곡배출사업단 안정화, 영양플러스 시범사업 추진

#### 소요예산

60,000천원

#### 사회통합형 자활사업이란?

취약계층의 탈빈곤 및 실직의 항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주체, 지자체 및 중앙정부, 민간기업 등과 연계하여 수행하는 자활사업



(재)중앙자활센터 | 사업개발 지원 06

## 02 | 사업개발 및 지원

### 자활생산품 유통활성화 및 자활나눔축제

#### 사업개요

- ✓ 굿'스굿스 브랜드 전파(자활나눔축제 등)
- ✓ 서로좋은가게 지원으로 사회통합적 유통모델 마련

#### 사업내용

- **자활생산품 품질인증기준 마련**  
상품군별 품질인증기준 마련을 통한 굿'스굿스 상품 활성화
- **Social Franchise 유통매장 '서로좋은가게' 전국화**  
서로좋은가게 매뉴얼 재정비 및 가맹점 개점 지원('12년 11개 → '13년 29개 확대)
- **자활사업 홍보를 위한 축제 개최**  
분과 토론회 개최, 자활사업 박람회, 우수자활생산품 경진대회 등(6월 중)

#### 소요예산

211,700천원



(재)중앙자활센터 | 사업개발 지원 07

## 02 | 사업개발 및 지원

### 자활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 사회적 경제와 자활사업의 연계 강화
- ✓ 자활기업의 협동조합 설립·전환 지원

#### 사업내용

- **인정자활기업 등록 및 육성**  
자활기업 전수조사, 등록시스템 개발, DB활용한 우수자활기업 육성
- **전국 자활기업 설립지원**  
'13년 2개소(주거복지, 재활용) → '15년까지 7개소 확대
- **자활기업의 협동조합 설립·전환**  
'13년 40개소 → '15년 160개소 확대

#### 소요예산

86,000천원



(재)중앙자활센터 | 사업개발 지원 08

## 03 | 교육훈련

### 종사자/참여자 교육훈련 지원

#### 사업개요

- ✓ 지역·광역자활센터 교육과정 체계화/표준화
- ✓ 종사자 전문성 강화,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탈수급 동기 촉진

#### 사업내용

- **자활연수원 운영역량 구축**  
자활연수원 운영이 필요한 교육과정 드물 연구/간담회(1식, 3회)
- **교육과정 체계화 및 효율화**  
교육 가이드북 제작, 교육효과 평가지표 개발, 사례관리 간담회 등
- **종사자 전문성 향상, 참여주민의 자기효능감 강화**  
지역·광역자활센터 종사자 교육(11회), 참여주민 교육(8회)

#### 소요예산

168,000천원



(재)중앙자활센터 | 자활사업 교육 09

## 04 |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기획단 연구

#### 사업개요

- ✓ 자활사업 정책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분석
- ✓ 자활사업의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자활사업 개편 연구 기획단 운영  
행정, 복지, 고용 분야 전문가 연구단 구성
- 향후 방향성 및 세부 실행계획 마련  
세부 실행계획의 체계적 추진마련(로드맵 구성 및 추진)/ 3개 과제



#### 소요예산

40,000천원

(재)중앙자활센터 | 자활 조사연구 10

## 04 |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화 추진

#### 사업개요

- ✓ 자활사업 전국 참여자 패널구축
- ✓ 자활사업 영향 및 정책효과성에 대한 다각도 분석

#### 사업내용

- 1차년도 자활사업 패널 예비조사(1,500명)  
자활사업 패널 대상자 및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기반 구축/운영
- 2차년도 자활패널 구축을 위한 조사도구 업데이트·시스템 관리  
2차년도 패널 대상자 설문문항 등 업데이트, 지속적인 패널대상자 관리
- 자활사업 영향 및 효과성에 대한 분석  
취창업 및 자활사업 참여 이후까지의 자료분석, 해외사례와의 비교분석

#### 소요예산

90,600천원

(재)중앙자활센터 | 자활 조사연구 11

## 04 |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 사업현장 실태조사 및 분석

#### 사업개요

- ✓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유형별 인식도 조사
- ✓ 자활사업 정책성과에 대한 분석자료 마련

#### 사업내용

- **지역자활센터 지역유형별 전수조사**  
도시형(126개소), 도농복합형(55개소), 농촌형(66개소) 센터 전수조사 진행
- **자활사업의 유기적 데이터 마련**  
자활사업 내용과 진행방식, 결과물 등에 대한 유기적 데이터 마련

#### 소요예산

20,300천원

(재)중앙자활센터 | 자활 조사연구 12

## 05 | 자활관련 기관 네트워크

### 자활복지 포럼 운영

#### 사업개요

- ✓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전문 공론의 장 마련
- ✓ 공적부조, 빈곤탈출 등 정책별 제도개선 사항 도출

#### 사업내용

- **유관기관 및 연구자간 교류, 정책 관계자 연계 내실화 도모**  
현장-학계-정부(중앙/지방) 간 현안 논의 및 제도개선 사항 마련
- **상반기 정례포럼 4회, 공개포럼 2회**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사회복지정책학회/정책학회 등 발제지원



#### 소요예산

44,900천원

(재)중앙자활센터 | 자활 네트워크 13

## 05 | 자활관련 기관 네트워크

### 자활사업 및 기관홍보

#### 사업개요

- ✓ 자활사업 정보의 일원화 및 관심도 지속적 확보 유지
- ✓ 홍보의 시의성 있는 전달방안 마련

#### 사업내용

##### ● 자활사업 저널 '자활읽기' 발행

국내외 최신 자활사업 정보 및 동향 소개(연2회/2,600부)

##### ● 온라인 홍보 활성화

일일 모니터링 → 정보 메일링(웹진), 홈페이지-SNS 간의 연계 강화

##### ● 시기별 다양한 홍보방법 도입과 활용

기자리스트 구축, 언론보도, 신문, 방송 등



#### 소요예산

70,920천원

(재)중앙자활센터 | 자활 네트워크 14

## 06 | 탈빈곤 프로그램 다각화 유도

### 희망리본프로젝트 전국화 추진

#### 사업개요

- ✓ 희망리본 사업의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관리 체계화
- ✓ 희망리본 사업 수행기관 성과관리 체계 강화

#### 사업내용

##### ●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T/F 조직 운영

##### ●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 시스템 체계화

##### ● 한국형 성과관리형 사업모델 도출



#### 소요예산

600,000천원

(재)중앙자활센터 | 자활경로 마련 15

## 06 | 탈빈곤 프로그램 다각화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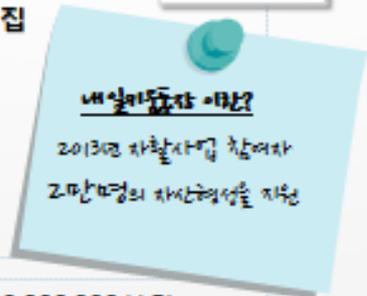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내일키움통장)

#### 사업개요

- ✓ 일하는 기초수급자 대상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활 촉진
- ✓ 내일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진입 약착화 도모

#### 사업내용

- 희망키움통장 1기 18,000명, 2기('13년) 14,000명 추가모집
- 대상자 관리 및 민간매칭금 관리  
매칭금 월 2회 실행
- 자산형성지원사업 실행기관 모니터링  
지자체 및 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 컨설팅(20회)



#### 소요예산

희망키움통장 13,632,291천원, 내일키움통장 13,000,000천원

## 07 | 수탁사업

### 돌봄서비스교육센터운영

#### 사업개요

- ✓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및 직능별 프로그램 확립
- ✓ 돌봄사회서비스의 품질고도화

#### 사업내용

-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교육  
특화교육, 필수교육, 직능교육 등 421회 / 7,217명 교육
- 돌봄사회서비스 품질고도화를 위한 교육체계 수립  
현장-학계 전문가 연구진 구성, 교육과정 개발
- 우수종사자 워크숍, 토론회, 홍보  
모범종사자 선정 및 표창, 미담 사례발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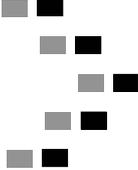
#### 소요예산

432,150천원

#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4. 고용 · 복지 연계정책의  
최근동향과 자활사업의 발전전망**

**노 대 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



#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최근 개편동향과 전망

노대명  
(2013.02.07.)

## I. 최근의 제도개편 논의

### □ 기초보장제도 및 자활사업 개편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한 단상

- 필자 생각에는 자활사업의 각 주체들은 자활사업이 직면한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봉합하는데 몰두해 왔던 것처럼 보임.
- 지금 기초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 지금까지 발표된 개편방안은 자활사업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최근의 논의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활사업을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힘들었다는 사실
- 일찍이 많은 사람들이 자활사업의 낮은 성과와 고립 문제를 경고해 왔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상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

### □ 이제 자활사업은 피하기 힘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진입

- 기초보장제도는 사실상 욕구별 급여체계의 개편이 예고되어 있으며, 근로빈곤층 지원 제도는 취업지원과 근로장려세제 중심의 확대가 예상됨.
- 아직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개편방향(욕구별 급여체계)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
  - 생계급여 수급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5%~70%로 조정하고, 주거급여를 분리
  - 중위 50%이하 취업수급자에게는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
  - 자활사업은 취업지원 프로그램(희망리본과 취업패)의 통합과 확대가 예정
- 남아 있는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미칠 영향
  - 자활근로와 자활기업 중심의 자활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
  - 그리고 이는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새롭게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임

## II. 다가오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 □ 한국사회에게 다가오는 몇 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

- 외부의 국제정치·경제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내부의 격차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시점
  - 저성장과 경기충격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용창출로 누적된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
  - 지금 경제성장과 고용창출과 관련해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중국·일본의 경제 패러다임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피할 수 없는 매우 큰 위협요인
- 우리사회에서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
  - 과거 ①투자확대 → ②경제성장 → ③고용창출 → ④고용안정 → ⑤격차박탈 해소 → ⑥복지수요 감소의 순(順)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논리가 지배적
  - 현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과 이미 심화된 소득격차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쌍방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음
- 이는 한국사회가 보수와 진보의 반복적인 정권교체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정책방향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있음을 의미

### □ 문제는 구체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편전략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하는 점

- ①사회지출 규모, ②지원영역과 지원대상, ③지원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
  - 복지확대의 정도(사회지출 수준)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 교육·고용·복지 중 어느 영역에 자원을 집중할 것인지
  - 노인인구와 근로연령집단에 대한 자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어떠한 자원배분 방식(보장성 vs. 효과성 vs. 효율성)을 선호할 것인지
- 개편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변수는 정치환경과 경제여건
  - 우리나라는 이미 <복지정치의 시대>로 진입 : 선거경합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에게 자원배분의 우선순위가 부여될 것임. 인구고령화와 중산층 등 ==> 기초연금 도입과 중산층 70%, 반값등록금 등
  - 경제환경이 복지확대 전략에 미치게 될 위험성이 증가 : 경제성장이 지속되지 않거나, 외부의 경기충격이 가해진다면, 복지확대의 정도와 속도는 급격히 위축될 개연성이 존재 ==>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할 일

### Ⅲ. 각국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최근 동향

#### □ 각국 고용복지 연계정책에서 나타난 최근의 수렴경향.

- 영국의 Universal Credit (2012년 복지개혁법, 2013년 전국화 예정) : UC는 실업부조(JSA-ib)와 공공부조(ESA)를 통합하고, 주거급여는 Cap으로 통제하는 소득보장제도와 Work First 전략을 선택
- 프랑스의 RSA (2009년 단일법,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 : RSA는 기존 공공부조(RMI & API)를 통합한 소득보장제도와 PPE를 결합하고, Work First 전략을 강화. 실업부조제도(ASS)는 별도로 유지
- 독일의 GA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 중) : 구직자 기초소득보장제도(GA)는 실업부조(ALG II)와 가구원 대상 공공부조(Sozialgeld)를 결합시킨 소득보장제도에, Work First 전략을 연계

#### □ 위의 복지개혁이 장단기적으로 의도했던 정책목표

- 제도개혁의 목표는 취업 수급자가 미취업 수급자에 비해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받는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어 변화를 유도하는 것
- ALMP 프로그램 중 성과가 저조한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노동시장진입을 강화하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
- 제도관리체계 상 ① 취업연계 강화 → ② 취업자 대상 인센티브 확대 → ③ 미취업 수급자 대상 기본소득 보장 순으로 재배치하는 것

#### □ 위 3국의 복지개혁에서 나타난 몇 가지 공통점

- 근로가능 빈곤층(Workable poor) 소득보장제도의 통합 : 동일 집단 대상의 분산된 소득보장제도들을 통합하여 정책관리를 효율화
- 취업중심(Work First) 프로그램의 강화 : 정부보조금 일자리,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수급자의 노동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공공부분 경직성 해소를 위해 영리공급자 투입
- 근로의무 부과에 따른 제재조치(Sanctions)의 강화 : 근로인센티브 제도만으로 근로유인 효과가 저조했다는 평가에 따라 제재조치를 강화
- <소득보장·취업지원·근로장려금> 패키지화 : 제도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세 제도를 연계한 <정책패키지> 구성. 미취업자 취업연계를 이 제도의 Gateway로 설정.

## □ 〈소득보장 + 취업지원 + 근로장려금〉 정책패키지의 출현

- 위 제도들은 1) 미취업 수급자에게는 근로의무를 강하게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2)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유지기간 등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 3) 이 모든 지원에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수급자에게는 기본 생계급여만을 보장하는 〈하나의 제도〉. 즉 〈정책패키지〉
- 이처럼 〈정책패키지〉를 도입한 이유는 근로빈곤층 대상 고용-복지제도 중 어느 하나만을 개혁함으로써 정책목표(취업과 탈수급)를 달성하기 힘들었기 때문. 특정 제도의 수급조건을 엄격히 규정하면 다른 제도로의 진입이 증가했던 것임.
  - 한국사회에서 근로빈곤층 지원제도를 분리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다분히 비현실적.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문제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내실화하는 문제를 뒤섞어 생각하기 때문
- 수급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기간의 일시적 제한이나 수급자격 박탈과 같은 강력한 제재방안을 채택. 이는 지금까지 관대한 복지정책을 유지했던 유럽대륙의 복지국가들에게는 전례없는 변화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대상 소득보장이나 가구단위 필수재인 현물급여에 대해 급여중단 등 제재를 가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도출이 곤란.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개혁사례를 참조해야 할 것임

## IV. 한국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발전방향

### □ 한국사회는 소득보장과 취업지원 그리고 근로장려세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고용-복지 연계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 이는 근로빈곤층 대상 생계급여제도와 취업지원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미 제정된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패키지의 형태
- 정책패키지는 각기 별도의 법률에 기초한 기존 제도들을 〈제도진입 순서〉와 〈급여 및 근로인센티브〉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결합체를 지칭
- 이 세 제도를 패키지화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이 취업과 탈빈곤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간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
- 지금까지 기초보장제도 하에서 근로빈곤층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 이 제도는 일정 소득기준(A)(중위 50%) 이하 근로빈곤층을 지원대상으로 설정

- 생계급여 수급기준(B)(최저생계비의 65~70%)을 충족하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며, 욕구가 있는 대부분의 현물급여나 근로장려세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수급
- 생계급여 수급기준(B)을 초과하나 일정 소득기준(A)에 미달하는 가구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현물급여, 기타복지, 근로장려세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수급
- 소득기준 (A)를 충족하는 집단 중 근로능력자는 취업지원을 강화
  - 취업자는 근로장려세제로 연계하여 고용유지와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취업을 촉진

[그림 1] 고용·복지연계제도의 수급기준과 지원내용

고용복지 수급기준 (중위 50%)	비해당	기타 복지 수급  ① 현물급여(주거, 의료, 교육 등) ② 기타복지(장학금, 전세주택, 사회서비스 등) ③ 근로장려세제 ④ 취업지원사업(자활사업)
생계급여 수급기준 (최저생계비 65~70)	생계급여 수급	

□ 욕구별 급여체계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올바른 지적이 아님

- 현 제도 하에서도 생계급여의 산정기준은 최저생계비의 65~70%수준으로 동일하며,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이 기준선을 개편할 개연성은 낮음
- 근로빈곤층 대상 생계급여제도의 수급기준선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타당하거나 효율적이 아님. 무리하게 정액급여를 도입하는 것은 비효율적
- 한 가지 변화는 기초보장제도 수급자가 자동적으로 수급하게 되는 각종 지원이 실제 욕구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된다는 점.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제도를 정상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임

□ 근로빈곤층 대상 생계급여제도를 분리하고, 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단일한 <고용·복지 연계제도>를 구축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

-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각종 복지제도에 대한 수급기준 및 급여를 차별화하지 않는다면, 근로빈곤층 대상 생계급여제도 분리를 반대할 이유가 없음
  - 영국은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복지개혁(UC)에서도 현 수급자에게 급여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제도개편원칙(Transitional Protection)을 천명
- 오히려 왜 서구 각국이 근로능력자 대상 생계급여제도와 노인·장애인 대상 생계급여제도를 분리해서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임.
  - 현재 그리고 장래에 노동시장상황에서 근로빈곤층의 생계급여제도 진입욕구는 계속 증가할 개연성이 높고, 통합된 생계급여제도의 개편은 매우 어려울 것임. 그리고 이는 장기실직 수급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 이것이 각국의 공공부조제도가 걸어왔던 길인 것임. 결국 생계급여제도가 분리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임.

**□ <고용·복지 연계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설계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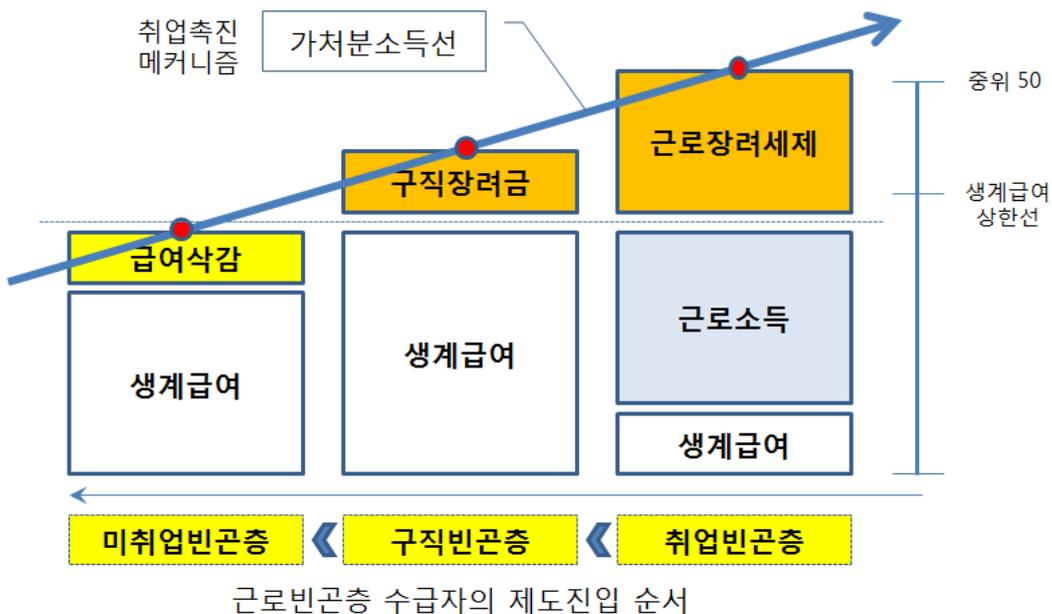
- 제도는 취업하는 것이 미취업 상태에 머무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는 방향으로 설계
  - 미취업상태에 머무는 것보다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도록,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근로장려세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임.
  - 기초보장제도가 욕구별 급여체제로 개편되면, 이러한 방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데 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게 됨.
-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취업수급자는 사실상 생계급여 의존도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미취업자 중심으로 생계급여 수요가 발생
  - 하지만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경우, 생계급여 수요는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감소
  - 2011년 차상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근로빈곤층 중 생계급여 수급자 규모를 추정하면, 약 20만 명 미만이 실질적인 생계급여 수급자이고, 일자리 기회제공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면 약 10만 명 내외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임.
  - 이는 구태여 정액급여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생계급여제도에 대한 근로빈곤층의 의존도가 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함. 구태여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면서 정액급여를 도입하는 비용을 치를 실익이 없는 것임.
  - 다만 조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급여삭감 등 보다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재의 제도운영 실태를 보더라도 의도적인 기피에 해당되기 때문임.

□ 제도관리체계에서 근로빈곤층의 제도진입(적용)순서를 재설정해야 함

- 기존 제도는 근로능력 수급자 관리체계가 미흡하며 분절적
  - 현행 제도는 수급자 관리체계 문제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음
  - 자산조사, 근로능력판정, 조건부과 대상 판정체계의 단일화와 강화가 필요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어서는 곤란
    - 어떤 경우에도 취업대상이나 비취업대상으로 구분하여 부처가 대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재현해서는 안될 것임. 이것이 자활사업이 많은 난관에 직면했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임
- 근로빈곤층의 제도진입 경로는 아래와 같이 설정해야 할 것임
  - ① 자산조사 + 초기상담 : 1차 Gateway
  - ② 조건부과 판정 : 취업자는 기타 복지지원 판정
  - ③ 미취업자 조건부과 : 취업연계를 2차 Gateway로
  - ④ 취업애로집단 집중지원 : 각종 ALMP, 자활사업 포함 프로그램 병렬배치
  - ⑤ 미취업자는 기본소득보장

□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래 그림임

[그림 2] 지원체계의 흐름도와 지원급여의 구성



## V. 취업지원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

### □ 자활사업은 이제 그 이름을 바꾸어야 할 시점

- 자활사업의 각 주체들이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 참여자에게 심각한 낙인감을 심어주고 있었다는 자성이 필요
- 한 때, 자활사업이라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었음. 하지만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는가
- 이제 자활사업은 새로운 이름을 찾아 참여자가 그러한 낙인감을 갖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에 이르게 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

### □ 취업지원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달체계 개편

- 현재 복지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논의를 감안할 때, <고용·복지 연계제도>의 공공전달체계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될 개연성이 높음
-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 그리고 직업상담사가 지자체(단위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그림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선정·근로능력판정·조건부과 프로그램배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
- 다만, 기존 희망복지지원단 내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한 보완이 필요함. 그 방법 중 하나는 고용분과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임

### □ 미취업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에서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

- 현재 미취업 빈곤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음. 지금까지 이들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저발전 되어 왔기 때문임.
- 희망리본사업이나 취성패사업의 통합은 사실상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음. 취업성과를 산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주도권은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에게 위임될 개연성이 높았기 때문임.
- 그리고 미취업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의뢰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미취업자 전체에 대해 초기단계에서 집중지원 프로그램에 배치하지 않고 구직노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 조치는 집중지원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부담 및 공급기관의 공급역량을 덜어준다는 현실적인 의미 또한 갖는 것임

- 이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미취업 수급자가 곧 바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임을 의미함. 이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이 다양한 공급프로그램 중 하나로 병렬적 지위를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함.

#### □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

- 첫째, 취약계층 대상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이 되는 것임 : 하지만 자활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의 대폭축소가 불가피할 것임
- 둘째, 희망리본이나 취성패의 민간공급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 이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받았던 지원방식과는 다른 지원방식을 전제하는 것임
- 셋째,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 : 이는 지역자활센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개편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센터에 대한 지원방식 또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
-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선택은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받고 있는 지원방식이나 기관지정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함

#### □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센터로의 전환전략은 좀 더 보완이 필요

- 지역자활센터가 제시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으로의 개편방안(김정원 외, 2012)이나 협동조합 설립방안(사회투자지원재단, 2012) 등은 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의 연계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시사.
- 하지만 이러한 개편방안 중 일부는 논리적 일관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논리개발이 필요
- 사회적경제 공단 등은 적절한 접근방법이 아님. 참고로 사회적경제 지원기구(부처 또는 그에 준하는 공공조직)를 설치하는 방안은 영국이나 프랑스, 벨기에 등이 선택한 방식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회적경제 공단 등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것은 전국 사회적경제 협의회나 지역의원들의 협의조직과의 연계 및 제도설계 등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그리고 자활사업이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과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인건비 보조를 보완화하는 방식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나 참여자의 자립욕구를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일 것임.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일시적으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과 해당 기업을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임.

## □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으로의 이행준비 또한 덜된 상황

-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수행했던 최근 연구결과는 자활사업 전체가 사회적경제로 이행하기 힘든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음.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자활기업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85.9%가 협동조합이 <일부 자활공동체에 적용가능하다>거나 <자활공동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로 응답하였음.
-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자활공동체는 응답한 자활공동체의 19%로 나타나고 있음. 자활사업은 아직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이행을 위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임.

## □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 사회적경제 기업(조직)으로의 취업 연계
  - 기초생활보장 미취업 수급자의 취업경로 중 하나로 설정
  - 저소득층 실직자의 취업연계
-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획 - 설립 - 안정화> 단계의 생애주기적 지원
  - 경영기술 자문
  -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창업자금 대출
-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사업의 기획과 연계
  - 자치단체와의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 부여
  - 이를 위해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포괄적 사업예산으로 변경
-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경영자문 및 창업자금 대출 전국 네트워크와 연계(중앙자활의 역할)
  -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단체(영리+비영리)와의 협력체계 구축

## □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

- 일몰제 적용 및 성과평가를 통한 재계약
- 포괄적인 사업비 지원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인력채용
- 지역별·업종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
- 외부의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기능의 강화

□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사회서비스 기업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
-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중 시장경쟁 전략업종은 전국단위 기업화를 추진
  - 공동의 브랜드 개발
  - 경영 및 회계의 표준화와 집중화
-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을 비영리 마이크로-크레디트와 연계
- 이 모든 과정에서 중앙자활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임

□ <사회적경제센터>로의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

- 2013년에는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센터를 설치
- 지역자활센터 중 참여를 희망하는 센터 중 선발하며, 외부의 기타 공급자의 참여를 허용하여 경쟁을 유도
-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원프로그램을 결정
- 약 3년의 기간을 두고 사회적경제센터를 전국단위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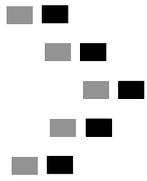
## VI. 맺으며

□ 자유 발언



### Ⅲ.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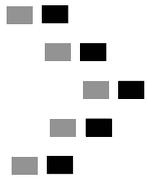




## 1. 참석자 숙소 배정현황







## 2. 질 의 서









